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http://www.theborn.co.kr>

ID: webmaster@theborn.co.kr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20341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22년 04월 26일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년 12월 18일

가맹희망자가 운영하게 될 [고투월]

정보공개서

(주)더본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주)더본코리아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 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전화: 02) 549-3864

Fax: 02) 511-3864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사업본부, 02)549-3864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 일반정보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고투월 외 24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주)더본 코리아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	대표 팩스
	1994.1.12	1994.1.21	백종원, 강석원	02)549-3864	02)511-3864
	법인 등록번호	110111-1002122	사업자 등록번호	211-86-00870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사용인 (임원)	백종원	고투월 외 24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대표자	대표 전화	대표 팩스
			백종원, 강석원	02)549-3864	02)511-3864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사용인 (임원)	강석원	고투월 외 24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대표자	대표 전화	대표 팩스
			백종원, 강석원	02)549-3864	02)511-3864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사용인 (임 원)	최경선	고투월 외 24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대표자	대표 전화	대표 팩스
			백종원, 강석원	02)549-3864	02)511-3864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사용인 (임 원)	강석천	고투월 외 24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대표자	대표 전화	대표 팩스
			백종원, 강석원	02)549-3864	02)511-3864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사용인 (임원)	김형수	고투월 외 24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대표자	대표 전화	대표 팩스
			백종원, 강석원	02)549-3864	02)511-386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최근 3년)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가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설명
명칭	고투웍	
상호	고투웍 ()점	
상표 (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40-2142045호

※ 당사의 상표, 간판, 마크, 로고 등에 대한 변경은 가맹점사업자와 사전협의의 없이 변동 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업표지 등의 변경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상호협의 하여 비용의 분담비율을 결정하고, 가맹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38,658,653	55,131,381	83,527,272	176,542,147	16,951,340	9,495,773
2022년	162,412,047	62,390,792	100,021,254	263,286,183	23,337,874	14,260,047
2023년	193,594,164	68,377,331	125,216,832	388,087,962	23,924,281	19,325,524

※당사는 2020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근거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거자료는 <별첨4-1>, <별첨4-2>와 같습니다.

2)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2020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근거로 매출인식방법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재무제표상의 매출이 상기자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백종원	대표이사	1994.1~현재	(주)더본코리아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05.3~현재	청도더본식품유한공사 대표이사	
			2007.10~현재	청도더본찬인관리유한공사 대표이사	
			2007.9~2013.7	(주)맛기신정 대표이사	
			2007.4~2013.7	(주)푸드패밀리0410 대표이사	
			2008.1~2009.1	(주)맛짱푸드 대표이사	
			2008.1~2013.1	(주)맛기정 대표이사	
최경선	강석원	대표이사	2024.3~현재	(주)더본코리아 대표이사	총무인사/ 재경업무 총괄
			2003.7~2024.3	(주)더본코리아 부사장	
			2007.4~2013.7	(주)푸드패밀리0410 상무이사, 감사	
			2008.1~2013.1	(주)맛기정 상무이사, 감사	
김형수	전무이사	2021.6~현재	(주)더본코리아 가맹사업부 본부장	가맹사업 부 총괄	
강석천	상무이사	2021.6~현재	(주)더본코리아의 재경본부 본부장	재경본부 총괄	
김현수	감사	2020.12.2~현재	(주)더본코리아 감사	법률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해당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4	1	33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2008.08 ~현재	새마을식당(등록번호:20080100208)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08.08 ~현재	본가(등록번호:20080100209)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08.08 ~현재	백종원의원조쌈밥집(등록번호:20080100207)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08.08 ~현재	홍콩반점0410(등록번호:20080100210)이라는 브랜드의 중식사업 경영 2013.8 (주)더본코리아로 사업이관
			2009.10 ~현재	한신포차(등록번호:20090100498)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09.10 ~현재	빽다방(등록번호:20090100502)이라는 브랜드의 커피판매 사업 경영 2013.8~현재 (주)더본코리아로 사업이관
			2009.10 ~현재	미정국수0410(등록번호:20090100499)이라는 브랜드의 분식사업 경영 2013.8~현재 (주)더본코리아로 사업이관
			2010.7 ~현재	성성식당(등록번호:20100100344)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12.07 ~현재	역전우동0410(등록번호:20120100352)이라는 브랜드의 분식사업 경영 2013.8~현재 (주)더본코리아로 사업이관
			2012.07 ~2023.02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백스비빔밥(등록번호:20120100315)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13.10 ~2023.02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대한국밥(등록번호:20130287)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14.06	돌배기집(등록번호:20140495)이라는 브랜드의

			~현재	한식사업 경영
			2015.05 ~현재	백스비어(등록번호:20150426)이라는 브랜드의 주점사업 경영
			2015.05 ~현재	백칠판0410(등록번호:20150417)이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17.04 ~2023.02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원키친(등록번호: 20170536)이라는 브랜드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2018.03 ~현재	리춘시장(등록번호: 20180318)이라는 브랜드의 중식사업 경영
			2018.04 ~현재	고속우동(등록번호: 20180402)이라는 브랜드의 분식사업 경영
			2019.04 ~현재	롤링파스타(등록번호: 20190227)이라는 브랜드의 서양식사업 경영
			2019.04 ~현재	인생설렁탕(등록번호: 20190275)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19.12 ~현재	빽다방빵연구소(등록번호: 20191285)라는 브랜드의 제과점 사업 경영
			2020.07 ~현재	막이오름(등록번호: 20200879)라는 브랜드의 전통주점 사업 경영
			2021.05 ~현재	제순식당(등록번호: 20211209)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21.08 ~현재	연돈볼카츠(등록번호: 20211998)라는 브랜드의 분식사업 경영
			2021.11 ~현재	빽보이피자(등록번호: 20215019)라는 브랜드의 피자사업 경영
			2022. 03 ~현재	퀵반(등록번호: 20220256)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2022.04 ~현재	고투월(등록번호: 20220341)라는 브랜드의 중식사업 경영
			2022.12 ~현재	홍콩분식(등록번호: 20221361)라는 브랜드의 분식사업 경영
			2023.01 ~현재	낙원곱창(등록번호: 20230087))라는 브랜드의 한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 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사업부의 이용기간)

고투월 (상표권)	고투월 가맹점 영업 과 관련된 일체 의 권리	등록 2024-01-17	등록 제 40-2142045호	(주)더본코리아	2034-01-17
--------------	--------------------------------------	------------------	---------------------	----------	------------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권)를 사용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당사의 상표(특허) 범위는 해당 점포 소재지에 한해서만 허용 됩니다.

II. 가맹본부의 [고투월] 가맹사업 현황

1. [고투월]을 최초가맹점영업이 시작한날: 2022년 06월 22일

직영점을 시작한날: 2022년 10월 21일

2. [고투월]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더본코리아	고투월	백종원	2022.06 ~2024.0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주)더본코리아	고투월	백종원,강석 원	2024.04 ~현재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길 39(5~6층)

3. [고투월]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고투월	대분류 중식	소분류(주요상품) 도시락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고투월]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2	1	1	7	7	-
서울	-	-	-	2	1	1	3	3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1	1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1	1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2	2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고투월]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0	0	0	0	0	0
2022	0	1	0	0	0	1
2023	1	6	0	0	0	7

*계약종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는 경우를 뜻함

*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만료 등의 특수한 사항으로 발생되어 본부와 합의를 거쳐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

*명의변경: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6. [고투월]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고투월]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 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 맹 본 부	(주)더본 코리아	백종원의 원조쌈밥집	20080100207	한식	23/1	16/0	14/0
		새마을식당	20080100208	한식	112/2	109/2	101/0

	본가	20080100209	한식	26/1	25/1	18/1
	홍콩반점 0410	20080100210	중식	269/1	278/1	282/0
	한신포차	20090100498	한식	135/1	129/1	116/0
	미정국수 0410	20090100499	분식	32/0	27/0	19/0
	빡다방	20090100502	커피	971/4	1,228/3	1,449/3
	성성식당	20100100344	한식	13/1	11/0	2/0
	백스비빔밥	20120100315 (23.2. 자진취소)	한식	0/0	0/0	0/0
	역전우동 0410	20120100352	분식	149/1	166/1	192/1
	대한국밥	20130287 (23.2. 자진취소)	한식	1/0	1/0	1/0
	돌배기집	20140495	한식	31/0	23/0	17/0
	백철판0410	20150417	한식	5/0	5/0	3/0
	백스비어	20150426	주점	71/0	87/0	79/0
	원키친	20170536 (23.2. 자진취소)	기타 외식	1/0	1/0	0/0
	리춘시장	20180318	중식	37/1	33/1	19/1
	롤링파스타	20190227	서양 식	103/1	120/0	126/0
	인생설렁탕	20190275	한식	22/0	32/0	27/0
	빡다방빵연 구소	20191285	제과 제빵	4/2	11/2	15/3
	마이오름	20200879	주점	23/1	32/1	29/0
	제순식당	20211209	한식	0/0	2/0	11/0

		연돈볼카츠	20211998	분식	4/1	68/1	49/1
		빽보이피자	20215019	피자	0/1	97/2	202/1
		퀵반	20220256	한식	0/1	1/1	0/0
		고투월	20220341	중식	0/0	1/1	7/0
		홍콩분식	20221361	분식	0/0	0/0	8/0
		낙원곱창	20230087	한식	0/1	0/1	0/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액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고투월]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역별 가맹점 점포 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매출액		연간 평균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7	216,204	13,949	268,697	16,794	163,712	10,914	2곳 산정	
서울	3	-	-	-	-	-	-	5곳미만	
부산	-	-	-	-	-	-	-	해당없음	
대구	1	-	-	-	-	-	-	5곳미만	
인천	-	-	-	-	-	-	-	해당없음	
광주	-	-	-	-	-	-	-	해당없음	
대전	-	-	-	-	-	-	-	해당없음	
울산	1	-	-	-	-	-	-	5곳미만	
세종	-	-	-	-	-	-	-	해당없음	
경기	2	-	-	-	-	-	-	5곳미만	
강원	-	-	-	-	-	-	-	해당없음	
충북	-	-	-	-	-	-	-	해당없음	
충남	-	-	-	-	-	-	-	해당없음	
전북	-	-	-	-	-	-	-	해당없음	

전남	-	-	-	-	-	-	-	해당없음
경북	-	-	-	-	-	-	-	해당없음
경남	-	-	-	-	-	-	-	해당없음
제주	-	-	-	-	-	-	-	해당없음

* 가맹점이 5개미만 지역의 경우 가맹점 매출의 직접적인 노출 우려 및 평균값의 객관성이 부족하여 내용에서 제외되었으며, 또한 자료의 객관성을 위해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의 가맹점만 산정되었습니다.

<추정 방법>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2023년 년간 본부매입액 / 가맹점 영업일수 = ①일평균 매입액]

※[일평균 매입액 / 본부비율(37.4%) = ②추정일매출액]

※[③연평균 일매출액 * 연간 영업일수 = ④추정 연간 매출액(가맹사업매출액)]

가. 일평균 매입액은, 각 점포별 2023년도 년간 본부매입액 / 가맹점 영업일수

/ 본부비율* 추정일매출액을 산정하여 함.

나. 연간 영업일수 365일을 영업한 것으로 가정한 것임.

다. 한계: 브랜드 내에서는 매출액 대비 매입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점.

실제, 신규점 및 잘되는 점포는 메뉴의 양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음 또한 매출액은 시장경제,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맹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기에 기재된 매출액은 추정치로 실제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라. 오픈 후 영업 6개월 미만 점포는 매출추정에서 제외: 두타몰점, 충무로점, 대구동성로점, 울산삼산점, 수내역점 총 5 매장 제외 매출산정에 포함된 실 점포 수는 2개점입니다.

8. [고투월]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고투월]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7개	267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별도의 지역본부를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 分	수 단	기 간		지출비용			비 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3.01.01~2023.12.31		7,808,880	7,808,880		
광고	비공개		비공개	1,735,182	1,735,182		
판촉	비공개		비공개	6,073,698	6,073,698		

※ (주)더본코리아의 2023년도 광고/판촉 관련한 지출내역이며, [고투월 외 24개]

브랜드의 광고/판촉 지출내역 일부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가맹금 예치

1)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에 인터넷으로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자료를 드려 안내합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강남대로점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19	02-3483-4116

가맹금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가맹금 이체동의서)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으로 계약체결 일을 포함하여 3일이내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 예치방법은 온라인이체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입금하시면 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	해당 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해당 사항 없음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해당 사항 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고투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관련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지역/위치/규모, 건물의 상태 및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分	지급대상	예치 여부	비고(금액)
가맹비등	가맹본부	전액 예치	가맹비, 교육비 점포면적에 따라 상이
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점포면적에 따라 상이
기타 비용	업체	예치하지 않음	점포면적/구조, 사용설비 등에 따라 상이

1)최초 가맹비등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1~1]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2,200				-개점 전 본부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고 즉시 소멸됩니다.
교육비	4,400				-영업 중 점포면적이 상향 조정되어 가맹비의 차이가 발생시, 당사에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비등 합계	6,600	계약체결 일로부터 3일이내	-반환되지 않음 (개점전 가맹본부 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만 반 환)	-가맹점의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본부의 대체출점 에 대한 기회비용	

***용어설명**

-가맹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입하는 대가

-교육비: 가맹점이 오픈하기전 가맹본부에게 받는 교육과정 입소 비용

2)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 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채무 및 위약금을 우선 상계처리 후 반환합니다. 세부내용은 [별첨1~2]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2,000	계약체결 일로부터 3일이내	-가맹본부 및 관계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본본 대여물품에 대한 정산하여 잔액 상환. (파손/기한 전 가맹계약 종료 등)	-직전 년도 전체 가맹점사업 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 금의 3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가맹금(가맹비등 + 이행보증금)은 **8,600천원(VAT포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총 합계	8,600
가맹비등	6,600
이행보증금	2,000

(가맹비등 = 가맹비 + 교육비)

※ 가맹계약체결 일을 포함하여 3일이내 완납하여야 가맹계약이 성립함.

4) 기타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준 평수 15평]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자	금액	3.3㎡당 평균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협력업체	32,175	2,145	별도협의	공사 전 계약 취소	점포 면적/구조에 따라 상이
시설집기	협력업체	28,000	1,867		설치 설비/집기에 따라 상이	
테이블등	협력업체	3,500			점포 면적에 따라 상이	
간판/싸인물	협력업체	5,000			간판 면적에 따라 상이	
POS/KIOSK	협력업체	3,700			설치 장비에 따라 상이	
CCTV/PTZ	협력업체	300				

(원격회전카 메라)						
초도물품대등	더본코리아등	4,000		물품입고 의월	상품 미공급시	점포 면적에 따라 상이
총계		76,675	업체와 별도 협 의	상세 설 계 전 계약 취 소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포컨디션,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철거, 냉난방기, 전기/가스 증설, 덕트공사, 소방설비, 화장실, 외부공사(테라스, 자동문, 창호 포함), 주방순간온수기, 냉동창고, 어닝, 용도변경, 각종 인허가, 지방 체제비, 디스플레이비품, 대형건물등의 특수요구사항, 통신설비 등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같은 평형대라도 점포 형태에 따라(건물형태, 현장상황, 노후정도, 품목 및 수량, 외장 및 내부옵션공사, 1차 설비-전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이 위 면적당 금액에 해당 매장의 면적을 곱한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 ※ 점포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불 금액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과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매장내부공사 비용은 상기 금액이 최소금액으로 **50㎡(약15평)**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위 비용은 점포 임대를 위한 부동산 관리비용(임대보증금/권리금/부동산증개수수료 및 기타 인허가 비용)은 제외한 투자비입니다.
-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더본코리아 협력업체] 또는 [가맹점사업자 개별 지정업체] 중 선택하여 매장내부공사 시공을 의뢰할 수 있으며, 선택한 시공업체와 각각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각의 공사비용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의뢰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계, 시공, 구매, 유지 하여야 합니다.(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개점을 위한 필수설비(매장내부공사등)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의 가이드를 받거나 의뢰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 용어정리

① 설계 및 도면 작성비 :

실측, 레이아웃, 시공계획도면(실측도, 평면도, 입면도, 천정도 등) 등 공사비 산출을 위한 비용

② 매뉴얼 관리감독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확정한 가맹점 실내외설계도면 매뉴얼 등에 따른 관련 공사를 감독할 수 있고, 귀하는 이에 대한 대가로 본사 또는 지정된 감독업체에 매뉴얼 관리감독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 운영 중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 합니다. 매뉴얼 관리감독비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 ※ 귀하가 인테리어공사를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매뉴얼 관리감독비는 면제됩니다.
- ※ 인테리어 공사시 지정업체의 설계 및 도면작성비가 추가로 발생되며 2,750천원 [15평까지 기본고정비 2,750천원(15평 초과 / 평당 55천원 증가)]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지정업체 이외의 가맹희망자가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당사에서 지정한 업체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의 경우 귀하는 당사에서 지정한 업체가 제공하는 매뉴얼 관리감독비로 4,950천원 [10평까지 기본고정비 3,300천원(10평 초과 / 평당 330천원 증가)]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가 정한 브랜드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사양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는 매뉴얼을 이해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별첨 1-6>을 갖추어야 한다.
 - ③ 필요시 가맹점사업자의 지정한 업체가 제공받는 인테리어 매뉴얼은 가맹본부의 중대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며 유출 방지를 위하여 "디자인 유출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실측, 레이아웃, 시공계획도면 진행 후 계약취소 시, 업무진행정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해당 업체에 지불 하여야 합니다.
- ※ 공사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설계, 관리감독비, 이동식가구 등의 지급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별도의 금융비용을加산하지 않으나 매장내부공사 착공연기, 공사중단, 물품공급 보류/중단,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점포 내, 외관에 불법적인 시공을 권장하지 않으며, 불법건축물 및 돌출간판 등에 해당 할 수 있는 시공은 가맹본사가 아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공 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매장내부공사와 간판 및 사인물에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로고 등 이미지의 규격, 재질 및 매장내부공사와 간판 및 사인물이 브랜드의 통일성에 따라 적정한 품질로 완성되었느냐 등을 검수하며 매장내부공사와 간판 및 사인물의 내용물이나 하자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않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내용물이나 하자에 대한 조치는 귀하가 계약한 거래상 대방을 통해 논의해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에 대해서는 부동산등을 통한 알선을 하지 않고, 가맹희망자가 직접 입지를 물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입지가 당사의 브랜드 별로 정한 규정에 적합한가 등에 대해 심사 후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당사에서 승인한 입지에 대해, 당사에서는 매출이나 영업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맹희망자는 매출/임차료 등에 대한 적합성과 해당 입지가 법적/구조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p>당사의 브랜드 별로 정한 규정에 적합한가 등에 대해 심사 후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p> <p>①창업설명회 참석 → ②가맹희망자 입지확인 후 해당 브랜드담당자 전달 →③지도/ 사진&현장 방문 승인여부 결정/통보→ ④가맹희망자 최종 결정</p> <p>-승인여부의 사내 기준-</p> <p>1)기준 [고투월] 점포와의 상권중복 여부 2)점포의 전용면적 적합성 3)점포의 위치: 1층 우선 (상권이 우수한 경우 제한적으로 2층도 고려) 4)가시성 및 접근성 5)주변 동종업종 분포 6)기대수익에대한 실현가능성</p>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교육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아닐 것 -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
종업원 (홀/주방)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9세 이상 -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

* 가맹점사업자의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포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 귀책사유이므로, 당사에서는 가맹비등을 일절 반환치 않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고투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지정업체는 가맹본부의 정기적인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수 없는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별첨 1-3>	매년 계약일	미경과분		연간 1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 협의하여 금액 결정	별도 약정			미 통지 시 본부부담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 협의하여 금액 결정	별도 약정			미 통지 시 본부부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실비지급 (1회당 110만원이하)	실시 10일이 전		반환되지 않음	연간2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 용	협력업체 & 개별업체	업체와별도 계약	별도약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POS 프로그램	협력업체	업체와별도 계약	별도약정			설치장비.수량 에

사용료						따라 상이
POS 유지보수료		업체와별도 계약	별도약정			
CCTV/PTZ 유지보수료	협력업체	업체와별도 계약	별도약정			
DS 할부(렌탈), 유지보수료	협력업체	업체와별도 계약	별도약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계약연장시 추가 부담: 로열티 지연 시 연간15%	재계약 시점	일 할 계산		
물류비	가맹본부	*제주도/도서산간 지역: 택배비 별도 부담	즉시 지급			VAT별도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위생사고나 메뉴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식재료 보관/재고관리의 적절성 등에 점검 및 보완에 대해 분기별 또는 수시 점검 하며,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계약 종료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는 매년 계약일이 도래하는 월에 로열티를 납부해야 하며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기해서는 세부내용은 [별첨1~3]에 나와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1) 귀하가 운영하는 [고투월] 브랜드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변경은 명의변경이 아닌 영업의 양수도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법인"은 영업의 양수도와 관련한 절차의 준수 및 관련 비용을 다시 지급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에서는 양수 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적성이나 인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3) 본부의 승인에 의해 영업권을 양도 받는 자는, "교육비", "로열티" 및 "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게 다시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그 금액은, 양도되는 시기의 "교육비", "로열티" 및 "이행보증금"에 대한 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이러한 금액은 물가변동이나 가맹본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후의 조치 사항

: 계약 종료 후에도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가맹본부는 민사상 혹은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1) 영업중단 및 간판 철거, 이미지 및 상표, 상호, 표장, 디자인, 싸인물, 로고 등을 파기해야 합니다.
- (2) [고투월]과 관련된 일체의 경영노하우, 조리방법 및 레서피와 같은 사업비밀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 (3) 매뉴얼, 교육자료, 설비 등과 같은 사업본부의 자산은 즉시 반납/확인 받아야 합니다.
- (4) 가맹계약서 및 제공된 정보공개서 반납/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5) [고투월]의 이미지 혹은 시스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업적 이미지, 디자인, 로고, 영업형태, 시설이나 외관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혼동을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본부로부터 인테리어나 간판의 개선에 대해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 받은 지 3년 이내에 폐점이나 영업을 양도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7)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점포"의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신고 확인증(상호변경등록을 하고 상호변경등록 확인서)과 함께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이행보증금 및 로열티 미경과분 등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8)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소비기한(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계약 종료 전 일정한 범위(10~90%)에서 반품이 가능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는 [고투월]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설비, 용역 및 원/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증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이외의 품목은 <별첨 3-1>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가맹계약 체결 시 당사가 제공하는 권장 규격 및 사양에 따라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구입 및 설치해야 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별첨 3-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고투월]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주)디에스아이시스템	계열회사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특수관계인이 2023년도 (주)더본코리아 가맹점에 판매한 지출내역이며, [고투월 외 24개] 브랜드의 판매 매출내역 일부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고투월]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1) 디자인사용료: 당사에서 간판/테이블/의자 등을 점포별 규격에 맞게 재 디자인하고 제3의 업체에 Font 등을 사용하는 대가를 당사에 지불함.

※ 2) 점포 하나하나의 주방에 대한 기물 배치 등 주방설계의 대가로 한국주방 등이 당사에 지불함 [고투월 외 24개] 브랜드의 일부 대가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2) 당사가 [고투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메뉴를 무단으로 삭제해서도 안됩니다.

메뉴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주메뉴	원피스몰 (베이스 1종+메인2종)	가맹본부에서 정한 메뉴 외에는 추가 혹은 삭제하고 판매할 수 없음. 메뉴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됨.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해지하겠다는 서면 통지 후 미시정시 해약 가능 (단, 시정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통보와 동시 해지)	2024.03월 기준
	원피 레귤러 (베이스2종+메인3종)			
	원피 라지 (베이스 2종+메인4종)			
부메뉴	마라탕면			
베이스	계란볶음밥			
	차우차우면			
단품	스리라차마요새우			
	마파두부			
	제너럴쏘치킨			
	핫앤스윗포크			
사이드	마라군만두4ea			
	군만두4ea			
	게살계란국			
	마라스프			

귀하가 위 표에 표시되지 않은 메뉴를 판매하려고 하거나, 위에 표시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메뉴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메뉴에 대한 맛의 동질성을 훼손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계약위반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아래 표에 기재된 메뉴를 삭제할 수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청소년)	주류	거래상대방 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해지하겠다는 서면 통지 후 미시정시 해약 가능 (단, 시정한 날부터 1년이내 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	
고객	소스			

			는 경우 통보와 동시 해지)	
--	--	--	-----------------	--

※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이미지의 통일성을 위해 판매되는 메뉴에 대해 가격을 정하여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판매가격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메뉴명		권장가격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주메뉴	원피스몰 (베이스 1종+메인2종)	8,500	가맹점사업자 대상 인터넷카페 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2024.03월 기준
	원피 레귤러 (베이스2종+메인3종)	9,900		
	원피 라지 (베이스 2종+메인4종)	11,900		
부메뉴	마라탕면	9,900		
베이스	계란볶음밥	7,500		
	차우차우면	7,500		
단품	스리라차마요새우	13,900		
	마파두부	9,900		
	제너럴쏘치킨	9,900		
	핫앤스윗포크	9,900		
사이드	마라군만두4ea	5,500		
	군만두4ea	4,000		
	게살계란국	900		
	마라스프	9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더본코리아-고투웍-202406 접수본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반인에게 중화요리(중식 도시락)을 주된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고투웍	해당없음

당사가 [고투웍]의 가맹계약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설정기준	설정방법
영업지역 내 인구수 (500)명당 1점포로 한다. (인구수=거주자+근무자+이용자) -단,(500)명 이하의 경우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상권(ex:명동,종로,강남,동성로,충장로 등)은 유동인구 동선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영업지역을 확정한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3)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왕복4차선 건너편 비보호(동일브랜드 출점 가능) -특수상권(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학, 기차역, 지하철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여 상권설정 내라도 추가 출점 가능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가맹계약 별지의 영업지역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계약 갱신 시 합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 (안) 작성→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2)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p>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 가맹점사업자 등의 또는 별도 협의 후 합의 → 재조정</p>	<p>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通지하고, 서면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회신이 있는 경우 영업 지역 재조정. 만약, 가맹본부의 변경(안)에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거쳐 합의함.</p>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2)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고투월]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2.03	17.97	-	-

*기타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은 당사의 직영점 판매 매출액 비중입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고투월] 브랜드의 가맹사업의 최초계약기간은 계약월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중 어느 일방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됩니다.

*로열티는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나 당사의 서비스변화 등을 고려하여 로열티의 인상에 대한 추가수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갱신이나 연장일 90일 이전까지 귀하에게 통보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기간 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③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	①+15일 이내

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5항, 19조, 24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6조 2항, 24조
③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9조, 24조
④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2조, 24조
⑤ 점포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조2항, 4조, 24조

⑥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7조, 12조7항, 24조
⑦최초의 가맹계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양수도점은 양수도일에 계약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함)	24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합의해약	<p>①개점 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합의하면 계약기간의 종료 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음 (이 경우 상호 위약금을 청구치 못함)</p> <p>② 1)항의 합의 전 최소5주일전 문서로써 사전 통보해야 함</p>	25조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 후 미시정시 해지가능	<p>①고의로 개점전의 교육을 이수치 않거나 재교육에서도 불합격 되었을 경우</p> <p>②점포의 확보, 내외장 인테리어, 시설/집기등의 투자, 인허가, 가맹비등, (개점전)로열티, 이행보증금 중 하나라도 미실행/미입금</p> <p>③점포에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메뉴의 판매, 당사 시스템등의 점포경영외 사용이나 무단 변경, 점주연수비 미지급, 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등 보험의 미가입, 방역서비스(포충 등) 계약 미체결</p> <p>타 점포의 종업원에 대한 무단 스카우트, 권장가격/조리방법/레시피/지도 거래선 미이용, 규정목적외 용도로 점포활용, 본부승인 받지 않은 홈페이지/블로그/카페등 운영</p> <p>운영기간중의 추가 조리/친절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고객클레임 해결을 위해 당사가 요구한 재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방문점검시 미협조</p> <p>방문점검시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품 적발시 현장교육/지도비 미지급, 소비기한(유통기한)/선도 관리</p> <p>일정기간 미경과, 일정수준 미달 시 메뉴 도입/취급 중단, 정지 조치</p> <p>동종업종 종사/가맹본부'영업에대한 방해, 시설/집기의 방치 (비정상적 작동), 교육비 미지급, 지정 거래선외 이용을 위한 절차 위반, 판촉/마케팅활동 미참여 혹은 비용/수익 미지급, 대금/물류비결제기일 미준수, 원산지표시의무 미이행 당사에 예탁한 이행보증금에 대한 임의 처분</p>	26조2항

	(양도/담보설정등) 고객클레임 해결 노력 미흡 혹은 당사가 고객클레임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미지급, 계약기간중 혹은 공사중 점포면적 변경에 따른 가맹비/교육비 및 이행보증금 차액의 미지급 클레임이나 운영수준 저하/24시간영업에 대한 중단에 대한 미준수	
	④행정처분등 중요한 변동사항 발생에 대한 미通报	
	⑤당사에 대한 중대한 불신행위가 있었을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당사의해지권)	관련 계약 조문
①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③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장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26조 1항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5조)
⑤<삭제>	
⑥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	

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⑦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⑨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⑩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②의 경우에는 귀하가 그 차액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가맹점사업자의 상권보호를 위하여, 동일한 브랜드로 추가 출점을 하지 않겠다고 지도에 표시하여준 지역내 추가 출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조 2항
②계약기간중 점포면적의 확장으로 인하여 전용면적이 증가하여 가맹비/교육비/이행보증금 금액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20조 1항
③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출점전략이나 "점포"의 수익 등을 고려하여, 가맹비등이나 로열티를 감액할 수 있다.	6조 8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정 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가맹본부는 계약 수정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수정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가맹본부의 수정 요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불합리하게 동의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은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 = 가맹점을 일시적으로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제도)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영업의 양수도로 판단합니다.)

당사는 승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고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승인 여부는 해당 양도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당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승인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양도가 무산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양도 가능 기준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요구하는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 -당사가 요구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기준에 적합할 것(연령/적성/성격/프랜차이즈 이해도 등)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자간 계약 체결 예정일 5주전) → 당사 담당팀 면담/검토(20일소요) → 승인여부 통지 → 양수도 신규계약 체결 /양도자 합의 해약 실시 → 개점 전 교육 실시 (점주/종업원) → 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문의:프랜차이즈사업본부 (02-549-3864)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과는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수인은 가맹비를 제외한 교육비 및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양수인과 당사간의 가맹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와 양도인과는 합의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약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에서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상속 외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가맹점운영권의 제3자에 대한 대리행사 또는 업무위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 의 모든 권리의무	당사검토→담당부서 검토→승인 여부 통지→가맹계약체결→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교육비)
대리행사	불가	-	-	
업무위탁	불가	-	-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는 귀하가 고투월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국내 전 지역에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일반인에게 중화요리(중식 도시락)을 주된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해당사항 없음	문의:프랜차이즈사업본부 (02-549-3864)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고투월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귀하의 점포가 개점 후 매출의 추이를 관찰하여 영업시간과 휴무일에 대해 상호 협의합니다.

영업 시간	영업 일수	비 고
개점 후 협의	개점 후 협의	문의:프랜차이즈사업본부 (02-549-386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더본코리아-고투월-202406 접수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점포에서 24시간 영업을 원할 경우, 본부에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점포의 운영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본부에서는 점포의 24시간 영업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필수 운영인원	직접 근무(권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본사 교육이수)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귀하가 영업장에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매장운영을 위해서는 주방과 홀에 각각 권장 종업원수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귀하가 영업장에 직접 근무하기 곤란한 경우는 음식업에 경험이 있는 책임자를 채용하여 점포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관점 및 눈높이의 일치를 위해 <별첨 2> 점포점검List와 같은 Check Lis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의 결과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상호 협의합니다.

-전체 점포에 대한 메뉴관련 혹은 친절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분기에는, 본부 담당자가 귀하의 매장을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고투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체인 전체의 판촉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별 별도협의	그 외 비용	계획공고→비용 부담범위 공고→진행	
	가맹점모집	전액부담	-	포스터 부착 협조	
판促행사	전 점포 행사	행사별 별도협의	그 외 비용	(QSC미달점포 참여 거부될 수 있음)	
	개별점 행사	없음	사업자전액부담 원칙		본사 사전승인
모바일상품권	제휴행사	50%	50%	월 단위 정산 - 대금 청구 반영	대금 청구 별도공지
할인카드/ 멤버십/ /O2O마케팅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 진행별 별도 협의			별도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독자적으로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점포의 판촉으로 인해 주변 점포의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주변 점포에 알리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체인 전체의 이미지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3) 주류업체 등 거래업체 전 점포/체인점 판촉으로 인한 수익 발생시 배분

- 개별점 판촉: 수익금액의 50%를 가맹본부에 배분
- 전점포 판촉: 가맹본부가 수령한 수익금액 중, 각 점포별 수익금액의 50%를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에 배분 (단, 본부/주류업체 등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점포에 한해 배분)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하고 축적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의 유출이라고 하면, "갑"의 "Brand"의 시스템/레서피/조리방법/접객방법/메뉴얼/가맹계약서 등의 노하우를 "갑"의 사전 문서에 의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열람/대여/복사 등의 처분을 하거나 점유케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양도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점포"내에서 근무/교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점포"의 경영권을 양도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중 어느 일방이 가맹계약서의 각 조항에 정한 것을 위반 혹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상호 합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최소 5주일전에 문서로써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시 일백만원(₩1,000,000)을 지급해야 한다.
 - 2)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 일매출 제출시: "직전분기 3개월간의 평균 일매출액 X 계약 종료후의 영업일수 X 30%"의 공식을 적용한다
 - 일매출 미제출시: "직전 분기 3개점의 평균 일매출액 X 계약 종료후의 영업일수 X 50%"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3)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종료 후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지체일수 X ₩100,000)을 지급해야 한다.
- 단, 해당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2. 가맹본부의 가맹점 CCTV/PTZ 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CCTV/PTZ 자료 열람 요청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CCTV/PTZ 자료 자료 열람의 목적은 하기와 같습니다.

- 고객클레임 발생 시 근거자료 활용
- 가맹점 위생상태 및 제품 제조과정 및 제품상태를 확인

단, 가맹본부는 영업시간내 자료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개인정보 유출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자료 열람 요청시 매출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자료 열람 목적은 하기와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 가맹점사업자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단, 가맹본부는 매출자료 열람 목적이외의 사유로 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위반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 가맹본부/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등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 향후 본부 POS 구축시의 비용 부담 관련 사항

-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부 지정 POS업체 및 시스템(프로그램,기기장비,VAN사)을 도입, 개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에 필요한 투자금액 및 관련 비용은 <별첨 1-8> 표와 같이 부담하기로 합의합니다. 단, "점포 POS System"에 대한 구입비는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키로 합니다.
- 가맹본부의 지정 POS업체 및 시스템 등(프로그램,기기장비,VAN사)을 도입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본부 지정 POS업체 및 시스템 등(프로그램,기기장비,VAN사)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인터넷 문의 접수 -간단한 정보제공 및 사업설명회 참석 요청	D-45	-
창업설명회 및 개별상담	-사업전반 설명 -필요시 개별상담 진행 (구체적인 지역/점포가 있는 경우)	D-40	-
물건 소싱	-부동산 방문/물건 소싱 -물건 방문/상권확인 등	D-40~25	-
물건접수/방문	-가맹희망자가 제시하는 물건 접수/사전분석 -물건방문 및 당사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 -승인여부 내부 결정	D-40~25	-
최종 협의	-최종 협의 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D-40~25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후 계약 체결	D-25	-
가맹비등 외 예치	-국민은행에 가맹비등/로열티/이행보증금 예치	D-25	-
종업원 모집/채용	-적정 종업원수 협의 -종업원 모집/채용	D-25~10	-
점포 실측/설계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 선정 -점포 실측/설계/공사비등 비용 산출	D-25~22	-
인허가 문의/취득	-인허가 기관 방문/협의 -인허가 취득	D-25~22	-
도면 협의 등	-도면 협의 및 승인	D-22	-
인테리어 등 공사	-공사 실시 (인테리어, 주방 설비/집기, 전산설비 등)	D-21~2 (20일)	-
교육 실시	-점포 이론/실습교육 실시	D-11~2	-



(주)더본코리아-고투월-202406 접수본

	-Test 및 승인 (or 재교육)	(10일)	
개점	-개점 및 영업시작	D-day	-

귀하는 가맹비등(가맹비/교육비), 및 이행보증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일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국민은행에 인터넷으로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자료를 드려 안내합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가맹점사업자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5년: 최근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경과한 시점)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절차	-공사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90일이내,30% /2차: 1차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30% /3차: 2차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40%)
협의절차	-가맹본부의 권유(서면발송) → 가맹점동의(서면회신) → 환경개선 시행 -가맹점 신청 → 가맹본부 검토 및 승인(서면 승인) → 환경개선 시행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



(주)더본코리아-고투월-202406 접수본

	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비고	

2. 판촉진행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당사는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대상 및 내용	상품,설비(집기).판매촉진, 고객관리,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상품,설비(집기).판매촉진,고객관리,위생관리,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절차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지도내용, 기간,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설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지도 후[14]일 이내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지도 후[14]일 이내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비용부담	가맹본부 부담 (로열티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가맹점사업자 부담
비고	문의:가맹지원팀 (02-549-3864)	문의:가맹지원팀 (02-549-3864)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고투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어떠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지고 조달하셔야 합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당사는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고투월]** 브랜드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교육 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점포 경영의 개요 -검수, 메뉴의 조리방법 -종업원 채용, 교육 및 관리 -POS조작 및 접객방법 등	집합교육 이론/실습	개점 전 교육 이수/통과	필수교육
보수교육 (전 점포)	-신메뉴 교육 -친절 교육	집합교육 이론/실습		
보수교육 (클레임발생/ 운영상태미달 점포)	-조리방법 재교육 -친절, 위생 재교육	집합교육 이론/실습	본부 요구 시 즉시	필수교육
현장 교육 /지도비	점포현장 입점/조사 시 유통 기한 경과품 점검/시정조치	가맹점 현장점검/교육	본부 요구 시 즉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고투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分	최소 시간	비 용	비 고
신규교육	필수 운영인원	-당사 교육장/점포 <별첨1-1>의 교육비 적용	필수교육 (가맹비등에 포함)
보수교육 (전 점포)	개발되는 과정에 따라 상이	실비부담	
보수교육 (클레임발 생/ 운영미달 점포)	클레임의 종류 및 해당과정에 따라 상이	실비부담	필수교육

현장 교육 /지도비	점포현장 입점/조사 시 유통 기한 경과품 발견 시 10~30분	1백만원 (VAT별도)	-점포현장 입점/조사 시, 소비기한(유통기한) 경 과품 발견 시에만
---------------	---------------------------------------	--------------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개점 전까지 **신규교육을 받고 합격해야** 하며, 보수교육(전 점포/클레임대응)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사는 가맹계약서 제26조 2항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고투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매출액 산정기준

해당없음

<정보공개서 내용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프랜차이즈사업본부(02-549-386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1> 면적별 가맹비등 관련 기준 (단위: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즉시 소멸성)

구분	금액
가맹비	2,200
교육비	4,400
가맹비등 합계	6,600

<별첨 1-2> 면적별 이행보증금 기준 (단위:천원)

구분	금액
이행보증금	2,000

<별첨 1-3> 로열티 금액 관련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매월납부, 소멸성)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4> 지역별 공급가액 대비 물류비 상한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5> 가맹점 관점에서의 프랜차이즈의 단점

- 1) "갑"(가맹본부)에게 일정한 대가(로열티 등)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2) 인테리어, 간판, 메뉴/가격, 영업/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있어서, "갑"의 기준이나 통제를 따라야 한다.
- 3) "갑"의 영업실적의 건실성 정도에 따라 가맹점(가맹점사업자)도 영향을 받는다.
- 4) "을" 점포의 양도나 이전 시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 1-6> 별도 공사업체 선정시의 자격 요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의 경우에 허용한다. 단, 매뉴얼제공비 및 관리감독비 사전 지급 필수.

<별첨 1-7> CCTV/PTZ 규격, 업체 선정 관련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의 경우에 허용한다

<별첨 1-8> 향후 본부POS 구축시의 투자비용 및 관련비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9> DS(디지털사이트) 규격, 업체 선정 관련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의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스펙의 경우에 허용한다

<별첨 2-1> 점포 점검 List

점포 점검 List

점포명:
방문일시: 20 년 월 일, : ~ :

점 주	담당자

항목	점검 Point	점검 결과
홀 주방 청결	1)규정복장(2가지)을 착용하고, 청결한가? 신체 청결상 문제는 없는가?	
	1)메뉴판/홍보액자/홍보물(포스터, 배너)등 부착물이 바르게 부착되고 청결한가?(오픈시 설정기준)	
	2)양념통/수저통/냅킨통의 내용물 및 외,내부가 청결한가?	
	3)홀 내부전체의 청결상태는 양호한가?(공간[천정/벽/바닥], 집기시설물, 집기류[냉장고 등])	
	4)지정외 부착물이 있는가?	
	5)각종 집기 및 소모품이 정해진 위치에 있는가? (보관/청결상태)	
	6)홀 냉장고는 육안으로 볼때 청결한가? (정리상태 포함)	
	7)홀 냉동고는 육안으로 볼때 청결한가? (정리상태 포함)	
	8)홀 작업대/준비대는 육안으로 볼때 청결한가? (정리상태 포함)	
	9)화장실의 청소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주방 주방 청결	1)홀 직원들의 고객 응대와 접객은 양호한가? (진행시, 관찰을 통해)	
	1)규정복장(4가지)을 정확히 착용하고 있는가? / 청결한가? (육부포함)	
	2)매니큐어/진한화장/반지/시계/팔찌 등을 착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3)두발, 얼굴, 손, 손톱(길이) 의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1)각종 집기류는 정해진 위치에 잘 정리되고 청결하게 관리되는가?	
	2)주방 기물류가 청결한가?	
	3)주방 시설물이 청결한가?	
	4)주방 소모품류는 정해진 위치에 잘 정리되고 청결하게 관리되는가?	
	5)냉장고는 청결하고, 냉장고내 식재와 음식물은 잘 정리되어 있는가?	
	6)냉동고는 청결하고, 냉동고내 식재와 음식물은 잘 정리되어 있는가?	
	7)워크인냉장고나 식재보관창고는 청결하고, 내부에 식재와 음식물은 잘 정리되어 있는가?	

주방 위생	8) 주방의 선반, 작업대의 청결과 정리상태는 양호한가?	
	9) 주방의 벽(타일)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10) 주방바닥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1) 냉장고/냉동고가 적정 온도에서 관리되고 있는가?	
	2) 주방기구나 주방기물을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고 있는가?(파절기, 육절기, 제면기, 반죽기)	
	3) 칼, 칼보관함, 도마등의 주방집기는 정기적인 소독과 청결관리를 하고 있는가?	
	4) 고무장갑, 면장갑, 가타 사용품의 구분과 처리는 잘 하고 있는가?	
	5) 음식물쓰레기(쓰레기통) / 배수트렌치의 관리상태(찌꺼기,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6)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가?(해충, 포충 예방, 방충망설치유무)	

* ○, △, ×로 점검결과 표시

<별첨 2-2> 점포 점검 List

점포 점검 List

점포명;

방문일시: 20 년 월 일, :

항목	점검 Point	점검결과
홀 식재 관리	1)식재료, 음식물을 장시간 상온에 방치해 두는가? 2)냉장고 보관시나 기본 음식물/식재 보관시에 뚜껑(덮개)을 잘 덮는가? 3)오염된 바닥에 식재료나 조리된 음식물을 방치해 두지는 않는가? 4)상하거나 부패한 식재료가 없는가? 5)식재료/소스 등의 소비기한(유통기한), 선입선출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6)소스, 지정품목의 라벨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7)개봉된 소스의 보관방법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8)냉동식재료의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해동방법 준수 포함) 9)본사 지정품을 사용하고 있는가? 10) 식재료를 세제류(락스,트리오,세제(세척기,의류) 등)나 음식쓰레기(쓰레기통), 청소도구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점검포인트(점검 Point)		
메뉴 < 점검 > 1. 2. 3.	1)메뉴의 테이블 셋팅은 정확한가? 2)메뉴는 적정 온도로 데코와 셋팅이 정확하게 제공되는가? 3)주방메뉴얼 준수는 잘 되고 있는가?	

그외 문제점 / 추가사항의 문제점		
공지 / 전달	1)	
	2)	
	3)	
	4)	
	5)	

* ○, △, x 로 점검결과 표시



(주)더본코리아-고투월-202406 접수본

<별첨 3-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 품목의 대금 결제는 당일 대금결제로 진행됩니다.



(주)더본코리아-고투월-202406 접수본

<별첨 3-2>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4-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주)더본코리아-고투월-202406 접수본

<별첨4-2>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